##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병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870 발의연월일: 2022. 12. 12.

발 의 자: 안병길 · 구자근 · 권명호

김선교 · 김희곤 · 류성걸

박대수 · 백종헌 · 유의동

이종배 • 이종성 • 이주화

최춘식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은 선사, 하역사, 화주, 항만서비스업체간 다양한 방식과 조건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하고 있으며, 별도의 정형화된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전자메일 또는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화물손상, 일정 지연 등 작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도 당사자 간 계약조건의 해석이 상충하여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임.

이에 불공정한 계약 관행 타파, 작업분쟁 감소 등 산업계 지원을 위해 항만운송(관련)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를 도입하여 배상책임, 부당거래 요구 금지 등 계약의 일반사항 외에도 정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당사자 간 의무사항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(관련)사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(안 제27조의5 및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).

##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5(표준계약서의 보급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.
  -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소관 사업에 대한 도급, 용역,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7조의5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표준계약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도급, 용역,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계약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7조의5(표준계약서의 보급 등)
	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
	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공
	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
	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
	급하여야 한다.
	②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
	사업자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
	른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소관
	사업에 대한 도급, 용역, 위탁
	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
	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
	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.
제3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34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	
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	
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제27조의5에 따른 표준계약
	서를 사용하지 않은 자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